

운 영 위 원 회
소 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의 건



성 북 구 의 회
(운 영 위 원 회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의 건

제 안 일: 2017. 8. 11.

제 안 자: 이은영 의원

찬 성 자: 오중균 의원

1. 제안이유

-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으로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, 해당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현황

연구단체명	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	
변 동 의 원	당 초	정형진, 권영애, 조민국, 오중균, 안향자의원
	변 경	정형진, 안향자의원
변 동 일 자	2017년 8월 10일	
변 동 사 유	일신상의 사유	

-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,
- 현재 「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회」는 총 5명 중 3명의 탈퇴로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.

3. 관련근거

가.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2조(구성)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, 각 의원 연구단체마다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.

제3조(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)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,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등록취소)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2.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

제6조(심의내용) 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
4.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4. 참고자료

○ 의원연구단체 등록현황

연번	연구 단체	대표 (간사)	구성 인원	지원액
1	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연구단체	목소영 (김일영)	7	2,640,000
2	성북구 지방보조금 조사연구회	윤만환 (박학동)	9	2,640,000
3	성북구 패션봉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	김태수 (진선아)	8	2,640,000
4	성북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	정형진 (권영애)	5	2,640,000